

동작구의회공고 제2020-3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해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 되었고, 이에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안 제4조)
-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안 제5조)
- 다. 제설·제빙 대상범위(안 제6조)
- 라. 제설·제빙의 시기(안 제7조)
- 마. 제설·제빙의 방법(안 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관리자”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2.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3.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 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4.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5.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7.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를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6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
 -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제7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

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작업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9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제설·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	적설량		제설 · 제빙 시점 적설량		비고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서울은 0.5 이하 지역에 해당함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 · 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²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